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굿리치주식회사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6. 7. 6.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보험안내자료 관련 내부통제 미흡

보험모집을 위해서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는 보험의 주요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하며 제작사·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 내 일부 지점*에서 보험상품을 요약한 자료 또는 부속 서비스 안내서 등을 제작하면서 모집에 활용될 수 없음을 명시하지 않은 채 보험설계사에게 배포된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모집에 활용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본부 □□지점, ☆☆지점(◇◇◇)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 제작하는 자료에 대하여 관리·점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개인정보 관리업무 내부통제 강화

회사는 신계약 모집 및 보험금청구 대행 시 보험계약자 등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징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회사 자체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선임,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를 포함한 기술적 안전조치,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개인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질병·상해에 대한 민감정보 등 보험사 위탁업무(보험계약 모집·체결 및 관리 등)에 비하여 광범위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고 있으며,

* 2024.12.12. 기준 164만건(정보주체 수 기준, 중복 제외)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기록 보관 및 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개인정보 관리업무가 미흡하다.

또한,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기준이 미비하여 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나 다운로드 등 위규행위에 취약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보험모집 업무에 필수적인 고객정보에 대해서만 수집 및 보관하고, 접근권한 및 접근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규정 위반 시 구체적인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업무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 하시기 바랍니다.